

# 2025년 제2차 인천대학교 계약직원(보훈) 채용 공고

2025년 제2차 인천대학교 계약직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.

2025년 6월 19일

인천대학교 총장

## 1. 채용개요

채용직렬 : 현장무기계약직 현장관리원[미화분야]

채용분야 및 인원

채용방법	채용분야	채용 관련업무	인원
제한경쟁채용 (보훈대상자)	미화	• 대학 내·외부 청소 및 기타 미화 관련 업무 등	2명

※ 합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.

## 2.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

지원자격 및 우대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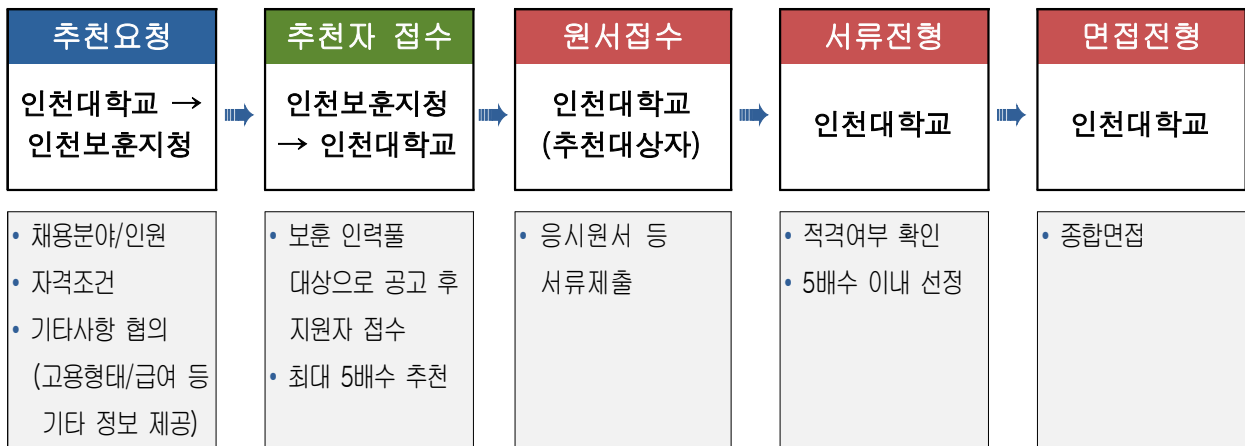
채용분야	지원자격 및 우대조건	채용인원
미화	<p><b>[필수 지원자격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인천보훈지청으로부터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</li> <li>• 응시연령 :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~만 65세 미만 자(정년 만 65세 임.)</li> </ul> <p><b>[우대사항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미화분야 경력자</li> </ul>	2명

### 3. 보수 및 복무

- 보수 : 연봉제(인천대학교 관련 규정에 따름)
  - 약 2,930만원(각종 수당 및 명절휴가비, 복지포인트 포함)
- 복무 : 인천대학교 관련 규정에 따름(주 5일, 주당 40시간 근무)
  - 근로시간 : 오전 7시 ~ 16시(휴게시간 1시간)
  - ※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### 4. 전형절차 및 전형일정 세부사항

- 전형절차 : 제한경쟁채용(보훈)



- 전형일정

구 분	일 정	비 고
채용공고	2025. 6. 19.(목) ~ 7. 3.(목) 17시까지	대학홈페이지 등 공고
보훈대상자 추천자 접수	2025. 6. 19.(목)	인천보훈지청 보훈과에서 인천대학교로 대상자 추천
원서접수	2025. 6. 19.(목) ~ 7. 3.(목) 17시까지 [인천보훈지청의 추천을 받은자]	이메일(recruit@inu.ac.kr)
서류전형	2025. 7. 8.(화)	
서류전형 합격자발표	2025. 7. 15.(화)	※ 합격자 개별통지 ※ 적격자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.
면접전형	2025. 7. 24.(목)	※ 개별통지 ※ 장소 : 인천대학교
최종합격자 발표	2025. 7. 29.(화)	※ 합격자 개별통지 ※ 적격자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.
임용	2025. 9. 1.(월) 임용 예정	

※ 채용 일정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.

□ 접수방법 : E-mail 접수

- E-mail 주소 : [recruit@inu.ac.kr](mailto:recruit@inu.ac.kr)

- E-mail 접수 시 유의사항 -

- 제출서류는 **하나의 파일로 스캔**하여 제출하고 반드시 이메일 ‘수신확인’ 을 하기 바람.
- 제출기한(원서접수 마감 시간) 경과 시 채용서류 접수가 되지 않으며, 접수시간은 인천대학교 메일서버의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됨.

□ 제출서류 : 「별첨」 제출서류(응시원서 등) 양식 참조

□ 기타사항

- 접수기간 종료 후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.
-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며,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.
-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는 개별통지 예정임.

- 블라인드 채용 안내 -

-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출신 학교, 인적사항(출신지역, 성별, 가족관계, 직장명 등)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. 개인정보를 직·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.
- 부득이 기재가 필요한 경우 “○○대학”, “○○은행” 등으로 기재
- 이메일 기재시 학교명/직장명이 나타나는 메일 계정 기재 금지

## 5. 최종 선발 및 예비 합격

□ 최종선발 : 최종 점수 산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

- 최종 합격자는 임용이 확정된 동시에 임용일로부터 전일 근무가 가능해야 함.
- 최종 합격자는 인천대학교 전 지역 캠퍼스에서 근무할 수 있음.  
(송도캠퍼스, 미추홀캠퍼스, 제물포캠퍼스)

□ 예비합격자 선발

-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자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 순위를 결정할 수 있음.
-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 발생 및 임용 후 30일 이내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, 예비합격자를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.

## 6. 우대사항

- 취업지원대상자(보훈) 가점
- 증빙서류는 관련 기관 및 정부24에서 발급 가능

대 상	우 대 사 항		적용전형
취업지원 대상자 (보훈)	가산비율	만점의 5% 또는 10%	서류전형 면접전형
	적용대상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※ 제출서류 :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※ 가점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채용단위별 최종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미반영(동점자 처리 순위에만 적용하며, 이 외 사항은 해당 법률에 따름). ※ 전형별 만점의 40% 미만이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 가점하지 않음.	

## 7. 지원자 유의사항

- 지원자의 기재 착오, 오입력, 누락, 연락 불가,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음.  
 ※ 응시원서 작성시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정확히 기재
- 채용 적격자가 없는 경우, 당초 계획보다 적게 선발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.
- 채용 합격 후 임용결격자로 확인되는 경우,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.
- 최종 합격자의 임용일은 우리 대학의 인력 운영 계획 및 추가 합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- 본 채용 계획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인천대학교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.
- 본 채용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대학교 관련 규정을 따름.

### - 채용서류 반환 -

- 신청기한 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
- 신청방법 : ‘채용서류 반환청구서’ 작성하여 이메일 신청([recruit@inu.ac.kr](mailto:recruit@inu.ac.kr))
- 온라인 제출 및 대학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.

**- 불합격자 이의신청 -**

- 신청기한 :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 신청
- 신청방법 : ‘불합격자 이의신청서’ 작성하여 이메일 신청([recruit@inu.ac.kr](mailto:recruit@inu.ac.kr))
- 이의신청서 검토 후 개별 회신하며, 채용 전형과 무관한 문의, 시험 출제·평가 관련자의 개인정보, 출제 기관 등에 대한 문의는 미회신함.

**8. 문의사항** ※ 평일 9시 ~ 17시 문의 가능

- 인천보훈지청 추천 문의 : 인천보훈지청 보훈과(032-588-4131)
- 원서접수 관련 문의 : 인천대학교 인력개발팀(032-835-9376)
- 채용분야 업무 관련 문의 : 인천대학교 시설관리팀(032-835-9545)

**인천대학교 직원 인사규정**

**제13조(결격사유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<개정 2019.3.29., 2019.5.24.>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<신설 2019.3.29., 개정 2019.5.24.>
8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 <신설 2019.3.29., 개정 2019.5.24.>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성범죄
9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<신설 2019.3.29., 개정 2019.5.24.>
10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<신설 2019.3.29., 개정 2019.5.24.>
11.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<개정 2019.3.29., 2019.5.24.>

**제13조의2(응시자격의 제한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자격을 제한한다. <신설 2019.3.29., 개정 2019.5.24.>

1.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2. 임용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자
3.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에 불응한 자로서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